

정하여야 하고,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,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,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,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

【원고, 피상고인】 ○○○보중 주식회사

【피고, 상고인】 ○○토지공사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2004. 9. 2. 선고 2004나16183 판결

【주 문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【이 유】

1. 원심은,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 의 판시사실들을 인정하였다.

가. 피고는 1996년 4월경 소외 주식회사 ○○ 및 ○○기업 주식회사(이하 통틀어 '○○ 계열사'라 한다)에 그 소유인 ○○시 ○○ 5비(B) 3엘(L) 대 23,239㎡를 비롯한 별지(원심판결의 별지를 가리킨다. 이하 같다) 제1목록의 부지지번란 기재 7필의 토지들을 매도하였다.

나.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각 매수인과 사이에, 매수인은 계약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되, 각 분할원금에 대하여 연 10%의 비율에 의한 할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며, 매수인이 할부원금

과 할부이자 및 정산금을 포함한 할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8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, 할부금의 지급을 3월 이상 지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다. ○○ 계열사는 피고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입하면서 원고(당시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었으나,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원고가 그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. 이하 설시의 편의상 승계의 전후를 묻지 않고 '원고'라 한다)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위 할부원금과 이자, 지연손해금의 지급채무를 원고가